

# 2017년도 특정감사 결과(복무실태)

## 1. 실시 목적 및 배경

- 하계휴가 및 을지연습 기간 전후의 복무현황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감사의 복무기강 강화 지시에 의한 특정감사 실시

## 2. 감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전 부서
- 범위 : 최근 2년(2016.1. ~ 2017.6.)간의 공가 신청 및 사용 내역

## 3. 감사 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2명(이경진 실장, 김수정 차장)
- 감사기간 : 2017.9.4.(월) ~ 9.5.(화)(2일)

## 4. 감사 결과

- 대상기간의 공가 기록 603건에 대해 신청사유를 검토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인 경우 실제 수검일(병원 청구기록)과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공가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직원은 신청 사유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가 사유가 아님에도 공가를 신청한 경우가 확인됨
- 공가 부당 사용
  -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도 공가 당일은 개인 용무를 보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에 받은 경우 16건(퇴사자 1명 제외)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1건이 확인되어 대상자들에게 해당 공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를 차감하고 주의 조치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간 대조점검 실시 필요

## □ 공가 착오 사용

-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착오로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례가 1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근무상황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이므로 연차 차감의 실익이 없는 경우(병가, 특별휴가, 기 결재된 복무 관련 신청 등 총 14건)를 제외한 연차 사유 해당 2건 (휴직자 1명 제외)과 건강검진 일자를 착오로 신청한 1건에 대해서만 해당 공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차감 및 구두 주의 조치 필요

## □ 휴가신청서 부실 기재

- 공가는 복무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함에도 공가를 신청하는 휴가신청서에 사유를 적지 않아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가 7건(건강검진 5명, 훈련 1명, 연차 사유의 착오 신청 1건) 확인된 바, 향후 공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유 기재 필요

## 5. 후속조치

	지적사항	조치사항	관련부서 (관련자)
1	공가 부당 또는 착오 사용	(주의) 공가 부당 사용자 대상 주의장 발부	기획조정실 (관련자 17명 대상)
		(시정) 공가 부당 및 착오 사용자 대상 연차 차감	기획조정실 (관련자 20명 대상)
2	관련 부서 간 상호 점검 미실시	(통보) 건강검진 실시 및 정산 완료 후 공가 신청일과 건강검진일과 대조 점검 실시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3	휴가신청서 부실 기재	(통보) 공가 신청 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	전 부서 (윤리경영방 공지)